



명목만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발 · 공유 · 소통 · 협력]

#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ww.mfds.go.kr](http://www.mfds.go.kr)

2015. 1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1

## 식품제조·가공업

1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1)..... 3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2)..... 4
-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위승계 (영업자를 개인→법인으로 변경)..... 5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생산 가능 여부)..... 6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의뢰제품, 위탁생산 가능 여부)..... 7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위탁생산 가능 여부)..... 8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사료제조업과 시설공동사용)..... 9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식품첨가물제조업과 공동사용)..... 10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공동사용)..... 11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식품소분업과 공동사용)..... 12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13
- 품목제조보고 (동일 제품, 제품명만 다르게)..... 14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유통되지 않는 샘플)..... 15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전량 수출용 제품)..... 16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제조 공정 중 반제품)..... 17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세트상품)..... 18
- 품목제조 변경보고 대상 여부 (포장 재질 변경)..... 19
- 품목제조 변경보고 대상 여부 (포장 단위 변경)..... 20
-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상수 사용 시 수질검사)..... 21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 시설기준 ..... 25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변경신고 대상 여부 ..... 26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품목(1) (냉동제품, 덜어서 판매) ..... 27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품목(2)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제품) ... 28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의무 여부 ..... 29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30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원재료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 31

## 3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식품첨가물 완제품 납품) ..... 35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농산물 소분) ..... 36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타 양봉업자가 채취한 벌꿀) ..... 37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소분한 제품의 재소분) ..... 38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본사가 아닌 공장에서 소분행위) ..... 39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완제품 세트조합) ..... 40
- 벌크형 두부 및 묵류 분할·판매 가능 여부 ..... 41
-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 42
-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 43
-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 44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 45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정수기, 온도계)..... 46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해당 여부..... 47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48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49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50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4)..... 51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 52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참고)..... 53

##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및 제과점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 57
- 식품첨가물과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 사용..... 58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59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60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61
- 제과점영업의 제품 일반음식점 납품 가능 여부..... 62
- 제과점영업 온라인 판매..... 63

## 5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커피 포장판매 가능 여부..... 67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옷가게 커피 조리 판매)..... 68
-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공동사용..... 69
-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술)..... 70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숙박시설의 조식, 바비큐용고기)..... 71
- 국방·군사시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72
- 식품접객업 판매메뉴에 따른 영업의 종류 ..... 74
- 아파트 복지시설 카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75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진열 판매 가능 여부..... 76
- 휴게음식점영업 종업원 위생모 착용 대상 여부..... 77
- 식품접객업소 상호명(외국어병행표기, 기호표기)..... 78
- 식품접객업 영업 변경신고(영업장 면적변경)..... 79

## 6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유흥(단란)주점에서 주간시간 다류 판매 가능 여부..... 83
-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객실의 면적기준)..... 84

## 7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 특정다수인의 범위..... 87
- 위탁급식영업 이동배식 가능 여부..... 88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상 여부(학원)..... 89
- 집단급식소 도시락 이동 제공 가능 여부..... 90
- 위탁급식영업 복지차원의 반찬판매 가능 여부..... 91
- 위탁급식영업 복지차원 피로연 진행 가능 여부..... 92
- 위탁급식영업 직권말소..... 93
- 영양사·조리사 대체인력 고용..... 94
- 영양사·조리사의 공동관리..... 95
-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 영양사 의무고용..... 96
- 집단급식소 변경신고..... 97

## 8

**허위표시·과대광고**

- 허위·과대광고 여부 (사행심 조장)..... 101
- 허위·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1)..... 102
- 허위·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2)..... 103
- 허위·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3)..... 104
-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의 효능)..... 105
- 허위·과대광고 여부 (식품에 GMP도안)..... 106
- 허위·과대광고 여부 (특허출원)..... 107
- 허위표시·과대광고 (원재료의 효능)..... 108
- 허위·과대광고 여부 (홍보목적의 블로그, SNS)..... 109

## 9

## 기타 사항 (건강진단,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1)..... 113
-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2)..... 114
-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3)..... 115
-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4)..... 116
- 특별사법경찰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출입·검사·수거 조치 가능여부... 117
-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범위..... 118
- 미 품목제조보고 시 과태료 처분기준..... 119
-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120
- 무표시 반제품 행정처분 적용기준 ..... 121
-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122
-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적용기준..... 123
- 법 제3조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행여부..... 124
- 지위승계 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시 산정기준..... 125
- 검찰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126
- 행정처분 차수적용(1)..... 127
- 행정처분 차수적용(2)..... 128
- 행정처분 차수적용(3)..... 129
- 행정처분 차수적용(4)..... 130
- 과징금 채무 대상..... 131
- 과징금 처분, 미납부 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 가능 여부..... 132
-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133
-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 유통 시 행정처분 기준..... 134
- 식품접객업소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준..... 135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3년) 행정처분 가능 여부..... 136
-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의 '영업자가 아닌 자'의 범위는..... 137
- 표시중량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적용 기준..... 138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 시 행정처분 ..... 139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미표시 제품 진열·판매, 행정처분은..... 140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범위(원재료 포함 여부) ..... 141
- 행정소송 진행 중 업소 정보공개 가능 여부..... 142
- 가격표에 표시된 주재료 등과 다를 경우 행정처분 적용..... 143
-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업종 무대장치 또는 춤추는 행위..... 144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지위승계 후 행정처분 주체..... 145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필요 여부..... 146



# 1. 식품제조 · 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1)

### Q 질문

채소류(양상추 등)를 선별, 세척, 절단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수 등으로 살균처리 후 행균 공정을 거친 후, 휴게음식점에서 원재료로 사용 시 별도의 세척 또는 행균처리 없이 소비자에게 바로 섭취 할 수 있도록 20장씩 진공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신선편의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상추를 원료로 하여 선별, 세척, 절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에 침지, 행균, 진공포장의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별도의 세척과정 없이 바로 햄버거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현행 「식품공전」 제5. 29-18 4) (3)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2)

### Q 질문

수경 재배한 새싹마늘을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건조기에서 70도 이하의 열풍으로 일정시간 건조 후 내포장재에 담고 밀봉하여 외포장 후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신선편의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피한 마늘을 수경 재배하여 수확한 마늘의 새싹을 절단, 건조(70℃ 이하), 포장한 제품인 바, 최종제품이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절단된 제품이라면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없거나,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위승계 (영업자를 개인→법인으로 변경)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개인(홍길동)에서 법인(대표자 홍길동)으로 변경 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재지, 영업시설 전부 등에 대하여 변동 없이 영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영업의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생산 가능 여부)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소(위탁사)에서 1차 가공 후 일부 공정을 제약제조사 또는 한약재판매업자(수탁자)에 2차 가공 의뢰 후 제품을 받아 위탁사에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2차 가공을 위탁받은 수탁사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2)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공정 위탁 시 동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한 자에게 생산 위탁이 가능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의뢰제품, 위탁생산 가능 여부)

### Q 질문

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조 의뢰받은 A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른 일부 공정 위탁생산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에 따라 제조·가공 전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2)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기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라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일부 공정을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위탁생산 가능 여부)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소(A사)에서 원료만을 제공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B사)에 위탁하여 A사 제품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른 위탁생산으로 볼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2)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일부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생산필요량이 업체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 제조·가공이 가능하나, 해당 제품에 대한 자체 생산라인 없이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조를 위탁하여 자사 제품으로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을 득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전 공정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사료제조업과 시설공동사용)

### Q 질문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라 동일한 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해서 식품과 사료를 동시에 제조할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자목 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경우에만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과 사료제조업은 함께 제조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식품첨가물제조업과 공동사용)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득한 업체로,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제조공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라 작업장 공동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자목 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라면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공동사용)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로 득하려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정이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설을 따로 구획하거나 분리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자목 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식품소분업과 공동사용)

### Q 질문

동일한 영업자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식품소분업 신고한 영업장의 일부 공정이 동일한 경우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라 작업장 공동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자목 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할 경우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 Q 질문

재처리(재분쇄, 살균, 건조 등)한 쌀겨가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쌀겨(미강)를 식품용도로 재분쇄, 살균, 건조 등을 거친 제품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1. 1) “곡류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상기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 (동일 제품, 제품명만 다르게)

### Q 질문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의 제조공정과 원재료의 함량, 배합비율, 용량, 포장방법 등 모두 동일하나, 제품명만 달리 해서 별도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할 경우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각각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공정), 성상 등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유통되지 않는 샘플)

### Q 질문

배합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테스트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 인가요?

### A 답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 등록을 하고, 품목제조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 목적이 아닌 테스트용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테스트용 제품임을 명확히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전량 수출용 제품)

### Q 질문

국내에서의 판매계획이 없는 수출전용 제품이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가공할 수 있으며, 수출 목적의 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소재지 관할 관청(시·군·구)에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제조 공정 중 반제품)

### Q 질문

유통·판매하지 않고 가공식품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반가공 원료를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영업등록관청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기재하여 사실대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아닌 제조·가공 공정 중의 반제품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세트상품)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표시완제품인 냉면과 냉면육수를 자사에서 제조한 표시완제품인 제육볶음과 세트화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표시 완제품과 자사에서 제조·가공한 표시 완제품을 단순히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동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사 제품 일부와 타사 제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합니다.

## 품목제조 변경보고 대상 여부 (포장 재질 변경)

### Q 질문

냉동 떡을 포장하는 포장재질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었는데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나일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품목제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질 등의 기타사항은 변경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변경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영업 등록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린 후 생산하는 것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품목제조 변경보고 대상 여부 (포장 단위 변경)

### Q 질문

최초 품목제조보고 시 포장 단위를 10g, 20g, 30g 으로 보고 후 추후 12g, 14g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단위 등의 기타사항은 변경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변경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영업 등록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린 후 생산하는 것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상수 사용 시 수질검사)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식품 제조 시 상수를 사용할 경우에도 지하수와 같이 1년 주기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분석의뢰를 해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는 용수가 수돗물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 시설기준

### Q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 한시적 영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장소의 시설기준이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나요?

### A 답변

한시적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제42조제1항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변경신고 대상 여부

### Q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증 상 식품의 종류에 김치, 절임식품류로 되어 있는데 조림류 반찬을 판매할 경우에 유형 추가를 해서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품목(1) (냉동제품, 덜어서 판매)

### Q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완제품인 냉동 국을 납품받아 끓이지는 않고 해동만 하여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제외)
-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다만,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제외)

현행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8)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및 젓갈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 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냉동제품을 납품받아 단순히 해동하여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 냉장상태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품목(2)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제품)

### Q 질문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제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다시 덜어서 팔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제외)
-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다만,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제외)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제품을 덜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의무 여부

### Q 질문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드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안전하게 제조·가공되는지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통해 행정기관이 확인·검토가 가능하므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가능하며 정보제공차원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선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유통을 목적으로 한 업종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Q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문을 받아 택배 등으로 배송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해당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형태의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원재료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 Q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는 조리식품을 타 영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식품소분 · 판매업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식품첨가물 완제품 납품)

### Q 질문

대리점에서 식품첨가물을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대리점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별꽃[영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되어 표시사항까지 적법하게 표시된 완제품을 그대로 타 업소에 공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농산물 소분)

### Q 질문

건고추를 1kg 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소분업이 있어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산물(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신선편의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제품이 건고추라면, “농산물”에 해당되며 단순 농산물을 포장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타 양봉업자가 채취한 벌꿀)

### Q 질문

타인이 생산한 벌꿀을 자사의 농축시설로 농축하는 영업행위 및 타 양봉업자에게 벌꿀을 구매 후 소분·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인가요? 식품소분업의 영업행위인가요?

### A 답변

질의하신 제품이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한 벌꿀을 농축(수분탈취)하여 병입한 제품이라면 자연산물(임산물)에 해당하며, 현행 「식품공전」 제5, 29-7 4) (2) “벌꿀”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가 벌꿀을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이 생산한 벌꿀을 자사의 농축시설로 농축하는 경우나, 타 양봉업자에게 벌꿀을 구매한 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을 득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소분한 제품의 재소분)

### Q 질문

식품소분업자가 타 식품소분업자가 소분한 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소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소분 행위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영 제21조제1호(식품제조·가공업) 및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분하고자 하는 제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표시 완료된 완제품(수입식품 포함)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본사가 아닌 공장에서 소분행위)

### Q 질문

본사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고 자사의 공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특한 상태의 경우, 공장에서 당면을 소분하여 포장·판매를 한다면 별도 ‘식품소분업’을 득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사와는 별도로 공장에서 식품 소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소재지 관할 관청(시·군·구)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완제품 세트조합)

### Q 질문

식품등수입판매업자로, 수입하고 있는 제품을 A제품, B제품, C제품의 3가지 제품을 뜯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소분업을 득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5호에서는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B, C 제품을 뜯어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이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벌크형 두부 및 묵류 분할 · 판매 가능 여부

### Q 질문

두부와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과 판매방법이 유사한 묵류(판, 벌크형 포장)의 경우도 영업신고 없이 분할 · 판매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벌크형 포장두부나 판두부를 슈퍼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분할 판매하는 것은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2014.9월)한바 있습니다.

두부와 유사한 포장방법과 판매방법인 묵류(판, 벌크형 포장)에 대해서도 상기 내용과 같이 영업신고 없이 분할 ·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의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 Q 질문

어업용얼음 판매 시 식용얼음판매업 영업 신고대상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얼음류 중 식용얼음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하여야 합니다.

식용얼음이 아닌 어패류 등의 저장 및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어업용 얼음’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식용얼음판매업 등 영업 등록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 Q 질문

얼음류 제조업자에게 포장된 얼음류를 그대로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식용얼음판매업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용얼음판매업’은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얼음 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포장한 얼음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 Q 질문

얼음류 제조업자로부터 포장된 얼음류를 납품받아 톱으로 절단하여 재포장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 식용얼음판매업을 득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용얼음판매업'은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용얼음 제조·가공업 영업자로부터 얼음을 납품 받아 절단하여 커피숍 등에 직접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얼음판매업'을 득하여야 합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 Q 질문

휴게음식점에서 커피머신을 설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득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휴게음식점’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커피머신이 휴게음식점 내부에 있고 직원이 뽑아주는 형태라면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정수기, 온도계)

### Q 질문

음료자판기 설치 시 해당 자판기에 정수기, 온도계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영업신고가 불가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2)세목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나목3)식품자동판매기영업. 나)에서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자동판매기’가 상기 규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대상으로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의 살균등, 정수기, 온도계가 부착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해당 여부

### Q 질문

A사가 유통전문판매업자인 B사에게 자신의 브랜드로 상품제조를 위탁하였으나, B사는 별도 식품제조·가공업 을 득하지 아니 하여, 위탁받은 제품의 전 생산 공정을 식품제조·가공업소인 C사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이러한 영업행위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사가 전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유통전문판매업’을 득하고 위탁한 가공공정을 행하는 자(C사)에게 직접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 Q 질문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제품이 각 지역의 대리점을 거쳐 납품받을 때 그 중간 납품업체(대리점)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득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리점이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경우 집단급식소에 직접 식품을 납품하는 대리점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 Q 질문

김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 학교 급식소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득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완제품(표시완료)을 납품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 Q 질문

집단급식소가 쌀은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배추는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와 직접 거래한다면, 직거래 농가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제나목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이 없어도 집단급식소에 쌀, 배추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4)

### Q 질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만 신고한 업체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나요?

### A 답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 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2)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식육 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신고한 경우
-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득한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이 없어도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축산물(포장육, 식육 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은 계란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

### Q 질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가 아닌 식품접객업소에 양배추, 양파 등 농산물을 세척 후 세절하여 납품할 수 있나요?

### A 답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에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집단급식소에 제공되어 오던 식품에 대하여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신설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는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참고)

### Q 질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로, 취급하는 물량이 늘어나 현재 사용하는 창고에서 모두 보관하기 어려워 25분 거리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창고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5호나목 5)세목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다)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지역에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및 제과점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자사에서 질소 제조기를 구입하여 과자에 충전할 질소를 제조하고자 할 때 별도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이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질소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충진을 위해 자사 제품 제조 공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질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등록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때 해당 질소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완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제조방법 설명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품첨가물과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 사용

### Q 질문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악리활성이 없는 원료의약품첨가제(부형제)를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서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5)에서는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이 식품첨가물에 전이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식품첨가물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 Q 질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운반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한다면 별도 식품운반업을 득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품운반업’이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량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단급식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업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학교 등)에만 식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합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 Q 질문

마트(기타식품판매업)와 계약하여 마트 로고 등을 표시하고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 포함)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자(기타식품판매업자 등)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라면 서비스 차원으로 보아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가 아니라면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된 자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및 제25조에 따라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살균유산균음료 포함)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과점영업의 제품 일반음식점 납품 가능 여부

### Q 질문

일반음식점에 제과점영업의 빵을 납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저목에 따라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의 기준·규격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제과점영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영업)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상기 규정에 따라 뷔페 형태의 경우에 한하여 제과점영업의 제품을 납품받아 당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과점영업 온라인 판매

### Q 질문

제과점영업자가 온라인에 빵을 게시하여 주문을 받고 택배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따라 제과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소의 제품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통·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을, 제조·가공한 제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득하여야 합니다.



## 5.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커피 포장판매 가능 여부

### Q 질문

휴게음식점에서 별도 유리병 용기를 구비하여 고객의 주문 시 커피를 유리병 용기에 담아 자율적으로 테이크아웃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영업의 형태가 적법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게음식점 내에서 로스팅 기계로 제조한 볶은 커피를 이용하여 커피를 조리·판매하거나 영업장 내에서 제조한 볶은 커피, 추출 커피를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고객 편의차원의 테이크 아웃 형태 포함)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옷가게 커피 조리 판매)

### Q 질문

옷가게 한 쪽에 테이블을 마련해놓고 손님들에게 커피믹스 및 캡슐 커피를 유상으로 판매 시 별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휴게음식점’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컵라면, 일회용 다류 등에 물을 부어 주는 행위나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단순히 완제품을 데우는 행위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가능할 것이나, 완제품을 뜯어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를 이용한 조리과정을 거쳐 음식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취식하도록 할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득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공동사용

### Q 질문

일반음식점영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작업장이 협소할 때 일반음식점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시설 자목 3)에 따르면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고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목 라) (3)에 따르면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영업자로 도시락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일반음식점의 조리장을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외에는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술)

### Q 질문

식품접객업소(유형주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양주(10병)를 양주병에 모아서 다시 판매할 경우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로 보아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러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남은 술을 재사용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저촉됩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숙박시설의 조식, 바비큐용고기)

### Q 질문

숙박업소에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조식 및 바비큐용 생고기 등 식사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업소의 홈페이지에는 숙박 손님들을 대상으로 바비큐 세트와 조식을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표기된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숙박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조식 및 바비큐 세트 생고기 등의 식사비용을 별도로 구분 표기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숙박요금에 식사류의 요금이 포함된 것으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숙박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추고 음식류를 조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숙박하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른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음식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음식류와 조리기구를 직접 제공하여 손님이 스스로 조리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방·군사시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Q 질문

건축물 용도가 “국방·군사시설”인 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를 일반음식점영업에 적합한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용도 변경하지 않고 국유 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제출만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아도 영업 신고 수리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10호\*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기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식품산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출받는 구비서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하여 건축물의 용도전환이 불가능하여 상기 내용의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구비서류만으로 영업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품접객업 판매메뉴에 따른 영업의 종류

### Q 질문

주로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음식(안주), 빵, 피자 및 주류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타목 3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와 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자, 빵, 치킨 등 식사를 판매하면서 주류,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로 다류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 부수적으로 피자, 빵, 치킨, 주류 등을 추가적으로 판매하고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영업자 준수사항 타목 3호에 위반되므로 질의하신 커피전문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어렵습니다.

## 아파트 복지시설 카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 Q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복지시설)의 일부 면적을 이용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특정업체 위탁하여 카페운영(차, 음료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아파트 주민에게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 복지시설 내에서 아파트 주민에게 차,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운영에 있어 아파트 복지시설(카페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유지관리(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관리비로 부과하며, 카페 입장 시 무료로 자신이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여 식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최소한의 경비(인건비, 재료비, 운영비(전기세 등)) 이외에 위탁 수수료 등을 제공하여 영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진열 판매 가능 여부

### Q 질문

일반음식점영업자로, 손님들께서 영업장에서 직접 만든 소스를 판매 요청하는 경우 소스를 미리 용기에 담아두고 진열·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물인 소스를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동 소스 제품을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포장하여 진열·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종업원 위생모 착용 대상 여부

### Q 질문

휴게음식점에서 계산대에서 단순히 계산만 하는 종업원과 커피 음료를 추출하는 종업원 또한 위생모 착용 대상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4호에서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 과정에서 머리카락 등 이물이 식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하므로, 커피 음료를 추출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 관련 [별표 27] 제1호 라목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상호명(외국어병행표기, 기호표기)

### Q 질문

식품접객업소 간판에 외국어만 표기하거나, 한글상호명과 함께 기호(!, & 등)도 사용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사목에 의거하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종명을 분명히 표기한 경우라면 기호(!, & 등)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어 표현은 한글상호명과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 변경신고(영업장 면적변경)

### Q 질문

「식품위생법」 제37조 등 영업허가사항의 변경대상 중 총 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설(객실 증감, 객석, 조리장 면적변경 및 위치변경 등)이 변경될 경우 영업허가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설(객실 증감, 객석, 조리장 면적변경 및 조리장의 위치변경)이 변경된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6.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유흥(단란)주점에서 주간시간 다류 판매 가능 여부

### Q 질문

유흥(단란)주점에서 주간에 커피, 음료수, 차 종류만 판매가 가능한지?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주간 시간에 다류만 판매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행위에 맞지 않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객실의 면적기준)

### Q 질문

단란주점 내 객실을 설치할 때는 객석면적의 1/2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평 중 2평은 주방, 18평을 객석으로 한다면 객실은 9평인가요? 6평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에서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객석과 객실의 면적은 조리장, 화장실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객석면적(객실면적이 포함됨)이 18평일 경우 객실의 면적은 9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7.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 특정다수인의 범위

### Q 질문

식권구입만으로 누구나 취식이 가능한 위탁급식소에서 현재 계약된 업체 외 다른 고객들도 취식을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내 이용고객의 범위에 동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7.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는 직원 등 특정 다수인을 급식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수의 외부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단급식소 대상자 이외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음식점’ 등 영업범위에 적합한 영업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문객 등이 일시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은 편의도모 차원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 위탁급식영업 이동배식 가능 여부

### Q 질문

위탁급식영업자로, 계약한 고객사의 부서가 분할되어 100명 정도의 식수인원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게 될 시, 급식을 위한 음식을 해당 건물로 이동하여 배식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현행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의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 신고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차 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등으로 외부로의 이동 배식은 적절치 않습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상 여부(학원)

### Q 질문

여학학원 운영자로, 학원생들의 편의차원에서 학원 내에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일반음식점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고 시설 운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설관계자(학원생)의 후생복지(이용자의 편의 추구)를 목적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한 후, 특정 다수인(기숙학원 및 일반학원을 이용하는 학원생)에게 1회 50명 이상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집단급식소 도시락 이동 제공 가능 여부

### Q 질문

제조회사에서 일부 근로자가 업무 특성 상 식당이용시간에 식사가 불가피 할 때 집단급식소에서 도시락 용기에 음식류를 넣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내 현장에서 도시락을 취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된 음식의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차 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등으로 외부로의 이동 배식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피급식자가 편의를 위하여 도시락 형태로 포장해가는 행위는 서비스차원에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탁급식영업 복지차원의 반찬판매 가능 여부

### Q 질문

위탁급식영업자로, 고객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반찬 판매를 요청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탁급식영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장에서 직원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반찬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찬을 만들어 별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와 분리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판매행위에 맞는 별도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탁급식영업 복지차원 피로연 진행 가능 여부

### Q 질문

고객사(집단급식소)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임직원 중 신청을 받아 예식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예식 피로연 음식은 집단급식소 내에서 위탁급식영업자가 제공할 예정인데, 운영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자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상기 규정 이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탁급식영업 직권말소

### Q 질문

위탁급식영업자로 '15.09.01일로 고객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나, 고객사와 '15.08.31일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위탁급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안했을 경우 영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탁급식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됨이 확인되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전 영업자에 대한 직권 폐업이 가능하며, 귀사는 이전 영업자의 신고사항이 말소된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영양사·조리사 대체인력 고용

### Q 질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와 조리사가 휴가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을 시 대체인력이 꼭 근무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서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에 따른 집단급식소인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하므로 영양사 및 조리사가 휴가 등 특정기간 동안 상기의 영양사 및 조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영양사·조리사의 공동관리

### Q 질문

산업체 집단급식소로, 동일 영양사와 조리사가 2개의 개별 업장을 동시 관리 할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며,

또한,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 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영양사의 직무 등)에서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집단급식소에는 신고 된 급식소 별로 각각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 상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 영양사 의무고용

### Q 질문

식사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를 두어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52조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의 산업체인 경우라면 영양사를 의무 고용하여야 하나,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영양사 의무 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집단급식소 변경신고

### Q 질문

입원 환자들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표자 1인이 추가되어 현재 2인 공동 대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후 다시 신규로 설치·운영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신고사항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설치·운영자의 성명’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에서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는 사람이 바뀐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은 개명,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의 성명’은 개명, 설치·운영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설치·운영자의 성명’인 즉, 개명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단신고 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허위표시 · 과대광고





## 허위·과대광고 여부 (사행심 조장)

### Q 질문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 건강식품 쇼핑몰에서 O제품을 판매하며 7박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 1박스(10,000원 상당)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을 경우, 사행심 조장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판례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사행심(射倖心)이라 하면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라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대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의 금액,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가 사은품을 득하는 것이 우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식품을 구매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은품 금액이 판매하는 식품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허위·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1)

### Q 질문

체험기 내용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만 위반인가요? 아니면 제8조제1항제2호도 함께 위반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3호 :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따라서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체험기를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허위·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2)

### Q 질문

온라인쇼핑몰의 고객이 사용후기 게시판에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후기를 작성하였을 경우, 그 글을 작성한 고객 또는 그 후기를 게시판에 방치한 판매자는 식품위생법 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광고,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식품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사용후기 게시판)에 작성한 해당 식품의 사용 후기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후기를 작성한 고객은 처분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방치한 해당 영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I,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3)

### Q 질문

‘천마즙’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의 구매후기를 평가·시상하여 자사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천마즙’ 구매자가 ‘속쓰림, 더부룩함이 완화됨, 변비해결’ 등의 체험사례 등을 영업자가 방치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이용후기를 자신의 홈페이지의 이용후기 게시판에 노출시키는 경우 그 이용후기는 식품등에 대한 정보로서 그 홈페이지의 이용후기 게시판을 접속한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서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용후기 게시판을 만들어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자신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저촉되는 내용(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의 체험기를 그대로 나누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이용후기 게시행위를 이용하여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의 효능)

### Q 질문

반찬류를 질환별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 여러 반찬들을 구성하여 ‘항암 식단’, ‘당뇨 영양 식단’, ‘심질환 영양 식단’ 등으로 표현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하여 ‘암’, ‘당뇨’, ‘심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 허위·과대광고 여부 (식품에 GMP도안)

### Q 질문

일반식품(다류, 액상음료)에 GMP도안 등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한 경우 GMP 적용 업소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식품(침출차)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GMP 도안’을 표시한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판단되어 상기 규정에 저촉됩니다.

## 허위·과대광고 여부 (특허출원)

### Q 질문

특허등록이 완료된 원료를 기타가공품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번호 및 특허명을 인쇄물이나 인터넷 광고물에 표현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의 경우 제외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의 특허 등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광고가 가능합니다.

## 허위표시·과대광고 (원재료의 효능)

### Q 질문

저는 흔히 당뇨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여주(Bitter melon)와 여주환의 형태로 홈쇼핑에 판매하려고 할 때 ‘여주, 카란틴, 폴리펩타이드 -p(여주 함유 성분)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다.’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과 또는 환 등을 함께 판매하면서 일반가공식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를 함에 있어 “혈당을 떨어뜨린다” 등 특정 기능 및 작용 등을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 허위 · 과대광고 여부 (홍보목적의 블로그, SNS)

### Q 질문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아닌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블로그나 SNS에 흑초에 대하여 ‘간 해독작용, 체지방 분해 활성화, 항체생성, 치매예방, 살균작용, 피로물질제거, 노폐물제거’ 등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 · 혼동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일반식품의 원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간 해독작용’, ‘체지방 분해 활성화’, ‘항체생성’, ‘치매예방’, ‘살균작용’, ‘피로물질제거’, ‘노폐물제거’ 등 특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광고(SNS, 블로그 등)에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 9. 기타 사항 (건강진단,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1)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자이나, 완전 포장된 식품을 다루는 일만 하는 종업원인 경우에도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전 포장된 식품을 다루는 일만 하는 종업원’이 상기의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2)

### Q 질문

실질적인 영업에 종사하지 않고 영업신고 대표자로, 관리만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3)

### Q 질문

‘영업자(사무실에서 인사관리업무만 행함)’, ‘경리직원(사무실에서 배송관리, 급여관리 업무만 행함)’, ‘배송직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영업자, 경리직원,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배송직원’의 경우는 상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4)

### Q 질문

무료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 및 배식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무료급식장소가 집단급식소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 단순 도우미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상 건강진단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사법경찰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출입·검사·수거 조치 가능여부

### Q 질문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없는 특별사법경찰 지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된 조치(출입, 검사, 수거 등)를 관내 식품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을 받지 않은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영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범위

### Q 질문

○○시·도에서 발급한 식품위생감시원이 타 시·도에서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업무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관할 범위는 소속기관 관할지역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할 지역 외의 영업소에 출입·검사·수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 미 품목제조보고 시 과태료 처분기준

### Q 질문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빵류 등 11개 품목을 생산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을 부과해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6.호에 따라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1개 품목에 대해 각 품목별로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 Q 질문

절임류(단무지)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로 적발된 경우 해당 품목별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받아 식품 유형별로 실시한 대표 품목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대하여 절임류 전체 품목별로 품목제조정지를 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의 의무가 존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12]에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절임류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절임류 모든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절임류의 품목별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표시 반제품 행정처분 적용기준

### Q 질문

완제품 생산을 위해 자사에서 제조한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미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대상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완제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완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제조한 반제품(양금)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사항 중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말하며,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 Q 질문

A업소는 성매매알선 등 위반행위로 1차 2회 단속(영업정지 4월15일)되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실시한 후, 처분보류 중에 청소년 유해접객원으로 고용, 유해행위(허가취소)를 하게 하여 단속된 바, 해당업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4개월15일 완료 후 허가취소 처분으로 해야 하는지, 단속시기가 상이하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단속된 사항이므로 각각 다른 두 위반행위에 대해 병합하여 허가취소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지?

### A 답변

처분은 위반된 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별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영업정지 기간을 준수하고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 것보다 영업 허가취소를 바로 하는 것이 공익상 이익이 더 큰 경우 영업허가 취소를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 내용의 영업자는 성매매알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접객원 고용, 유해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중대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아 영업허가 취소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공익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 바로 영업허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영업정지에 같은한 과징금 부과 적용기준

### Q 질문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영업정지에 같은한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인 매출금액 산출 시 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총액에서 공산품 등 비식품 매출을 제외한 식품매출만 매출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또한, 매출금액 산정 시 세무사가 작성한 수입금액명세서 또는 POS프로그램을 통한 매출 내역으로 과징금 부과 산정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에 대하여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영업장 면적은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에 필요한 판매장, 작업장, 냉장시설 등 식품 판매와 관련된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 내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 시 비식품의 매출을 제외한 식품매출로 매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출금액 산출 시 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식품, 비식품으로 구분하여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식품판매업소 소득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소득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식품, 비식품으로 구분 작성한 수입금액명세서를 과징금 산정근거로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 법 제3조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행여부

### Q 질문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1조(시정 명령)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제10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병행하여 부과하여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르면 제3조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르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6호자목·머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관련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만 가능할 것입니다.

## 지위승계 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시 산정기준

### Q 질문

금년에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로서 과징금 산정 시 신규사업으로 간주하여, 지위승계 후 일별·월별 등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으로 승계 받은 영업자는 행정처분도 상기 규정에 따라 승계되며, 승계는 양도인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은 승계 받은 영업소의 처분일이 속한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검찰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 Q 질문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참고인 중지로 공소시효가 지남)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가능하나요?

### A 답변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건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행정처분 차수적용(1)

### Q 질문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과징금 변경 처분 시 매출액 산정년도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 경우 행정처분 차수 적용 시 행정처분일 기준,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로 인한 경감 처분 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나.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을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한 연도는 2014년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의 결과가 연도를 달리하여 2015년도에 행정청이 승소한 내용으로 판결된 경우 과징금 매출액 산정 해당연도는 원 처분일 속한 연도(2014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처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상기의 경우 행정처분 차수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처분 기준일 또한 원 처분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5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차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I 과징금제외대상 4.호에 따라 과징금을 제외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처분이 행정심판결과 영업정지일이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징금으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행정처분 차수적용(2)

### Q 질문

기타식품판매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적발('15.02.16)되어 영업정지 7일 처분('15.4.14)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 결과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 2015. 7. 13.자로 과징금처분 통지를 한 이후 2015. 9. 21. 민원을 통해 동일마트에서 2015. 6. 27. 신고인이 업소를 방문하여 유통기한 하루가 경과된 제품 판매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행정처분 차수적용은?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1.일반기준 5.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2.16일 적발한 행위에 대해 '15.4.14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고 이후 동일한 영업장에서 '15.6.27일 동일한 위반 행위를 3개월 이후 확인 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15.4.14일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최근 1년 이내인 '15.6.27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차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 차수적용(3)

### Q 질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1차 행정처분(2014.7.1), 2차 행정처분(2014.11.1)을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2015.9.1. 재적발 된 경우 행정처분 차수적용은?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1.일반기준 5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 따라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질의회신(05-0039,13-0654)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행정처분(2014.7.1), 2차 행정처분(2014.11.1)을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2015.9.1일 재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이 2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가중하여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 행정처분 차수적용(4)

### Q 질문

유통기한 경과로 제품 판매로 1차 처분(2015.3.9) 이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2차 처분(2015.7.22)을 하였으나 영업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재결되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결과 전체인용을 받은 후, 동일 위반행위로 2015.10.30일 적발된 경우 처분 차수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1.일반기준 제5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 따라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행정처분이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선고 96누14678판결, 1997.5.30)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로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시 적발된 사항이 행정심판 결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가 전체 인용되어 행정처분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철회한 경우라면 상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2차시 행정처분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2015.10.30일 적발된 사항은 2차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과징금 채무 대상

### Q 질문

「식품위생법」 제83조에 준하여 영농조합법인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였으나, 체납되고 있는 경우라면 과징금 관련 채무의무가 대표자(개인)에게 있나요? 법인에게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83조에 따라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사업자로서 개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상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은 영업의 주체인 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과징금 처분, 미납부 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 가능 여부

### Q 질문

식품접객업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시 다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 과징금 부과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후 다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결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구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에 과징금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됨을 고지하였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였다면 동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 절차 등 추가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후 다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인정된 경우 남아 있는 영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 Q 질문

2014년 11월에 영업을 시작한 업소(일반음식점)가 2015년 10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시 세무서발행 과세표준 금액이 2014.11.20.부터 12.31까지 25,817,726원, 2015.01.01.부터 06.30까지 금액이 201,310,907원일 경우 과징금 산정은?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1. 나.에 따라 “영업정지에 같은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11.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 행정처분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인 2014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2014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4.11.20부터 12.31까지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 유통 시 행정처분 기준

### Q 질문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가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여 유통·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바목(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따라 1차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됩니다.



## 식품접객업소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준

### Q 질문

식품접객업자로, 조리·판매한 사과주스에서 초파리가 혼입되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업소에서 사과주스가 아닌 다른 조리식품에서 또 다시 초파리가 나온다면 2차 처분을 받게 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 일반기준 제5호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후단의 '같은 품목'이라 함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해당 업소에서 조리되는 모든 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과주스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되는 모든 식품 중 이전과 같은 이물이 혼입된다면 2차 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3년) 행정처분 가능 여부

### Q 질문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201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013년도 수질검사 미 실시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너에 따라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반자의 경우 특별히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행정청의 행위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기관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처분(1차 영업정지 15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의 ‘영업자가 아닌 자’의 범위는

### Q 질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납품 받아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에 위반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은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조제7호의 “영업자가 아닌 자”는 식품위생법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입니다.

## 표시중량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적용 기준

### Q 질문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과다한 얼음 코팅으로 표시중량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은?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에 따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진공포장 제외)된 것을 제외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4조(표시사항)에 따라 내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라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얼음 코팅을 한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1. 식품제조·가공업 등 7. 사.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 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부족량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 2개월에 해당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 시 행정처분

### Q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 하려는 자로부터 2013.11~2015.6까지 생더덕, 파우치, 포장종이박스 등을 공급받아 더덕액을 추출하여 파우치 등으로 포장한 후 유통·판매하도록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A 답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약 19개월간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를 하려는 자의 주문에 따라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미표시 제품 진열·판매, 행정처분은

### Q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완제품을 납품받아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에게 판매 하였을 시 행정처분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조·가공한 식품을 납품받아 그대로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1.식품제조·가공업 등 7.가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됩니다.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범위(원재료 포함 여부)

### Q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6]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서 제품이란 원재료를 포함하지 않는 완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3호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이를 식품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제조·가공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용 제품까지 포함됩니다.

## 행정소송 진행 중 업소 정보공개 가능 여부

### Q 질문

제3자가 행정처분 업소 명단을 공개 요청한 경우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진행 중인 행정처분 업소도 공개가 가능한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상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 가격표에 표시된 주재료 등과 다를 경우 행정처분 적용

### Q 질문

일반음식점 내에 부착된 가격표에 소양념갈비 (00)g (0000)원 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주재료인 소갈비는 갈비 일부(뼈 포함)에 살치살을 붙여 양념한 것으로 이를 손님에게 제공한 행위를 위반행위로 볼 수 있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6호제아목에 따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터목에는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커목에는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8.19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갈비에 살치살을 붙여 판매하면서 소양념갈비 (00)g (0000)원으로 표시한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제커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업종 무대장치 또는 춤추는 행위

### Q 질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 및 허가 후, 무도장, 조명시설, DJ박스와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영업과 유사한 영업을 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와 관련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개수명령(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3차 위반) 처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지위승계 후 행정처분 주체

###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체 'A'를 2015.03.06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B'로 상호변경)하고 영업하던 중, 기존 유통되었던 'A' 업체의 제품('15.03.03 생산)이 수거검사('15.03.15) 부적합(산가 기준초과)제품으로 통보('15.04.06)된 경우 승계 받은 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영업자지위승계(2015.03.06) 후 수거·검사(2015.03.15)하여 부적합으로 통보 받은 경우라면 양수인이 처분대상에 해당됩니다.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필요 여부

### Q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제48조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준용하여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나요?

###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41호 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대리인이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위임과 관련된 제출 서류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민원 사무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소 변경 신고 시 대리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임인의 도장(인)이나 신분증 등으로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이 확인된다면, 상기 규정의 취지를 볼 때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의 의무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